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, 사무명 변경, 오기사항 정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신 설 : 22건

<근거법령개정에 따른 신설 22건>

- (환경정책과)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(9건)

- ①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, ② 보고.검사 등, ③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, ④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, ⑤ 폐기물 처리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, ⑥ 폐기물 반입정지명령, ⑦ 의견제출, ⑧ 과징금의 부과 징수, ⑨ 대집행 및 비용징수

- (환경정책과)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관련 사무(9건)

- ①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, ② 보고·검사 등, ③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, ④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, ⑤ 방치폐기물의 처리, ⑥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, ⑦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, ⑧ 청문, ⑨과태료의 부과 징수

- (기후대기과)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사무 1건

-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의 접수

- (기후대기과)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3건

- ① 보고와 검사 등, ② 연차보고서의 제출, ③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○ 삭 제 : 7건

<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 7건>

- (농업정책과)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(1건)

- 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업·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·포장 사업의 준공검사

- (환경정책과) 고품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관련 사무 4건

- ① 고품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, ②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품 연료 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, ③ 고품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, ④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품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, 시설의 개선내역·다이옥신 검사결과 고품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

- (기후대기과)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
에 관한 관련 사무 2건
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
-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

○ 그 밖의 개정사항 : 6건

<위임사무명 변경 : 4건>

- (환경정책과)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2건

가. 폐기물 재활용 신고 수리 →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

나.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 → 폐기물의 처리에
대한 조치명령

- (기후대기과)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사무(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)

→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사무(도시대기측정망, 도로변대기측정망에 한함)

- (기후대기과)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

관한 사무 →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

<근거 법조항 개정 등 : 2건>

- (환경정책과)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에 관한 업무 법 조항 개정

- (공동체협력과) 과 명칭 개정 : 1건

· 민간협력공동체과 → 공동체협력과

5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시도로 위임된 사무의
신설과 시군구 이양으로 삭제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근거 법조항
개정으로 사무명 변경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 첫째, 폐기물관리법, 건설폐기물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에 따라 환경정책과의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9건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9건, 기후대기과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사무 1건,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3건 등 22건이 신설되고,

둘째, 농어촌정비법,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개정에 따른 농업정책과의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중 관련사무 1건. 기후대기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사무 2건, 환경정책과의 고탄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관련사무 4건 등 7건을 삭제하고,

셋째,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환경정책과의 폐기물관리 관련사무 2건, 기후대기과의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사무 1건,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사무 1건, 부서 명칭개정 1건 등 6건에 대해 개정하고자하는 것임.

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무의 신설 및 삭제, 근거 법조항 개정, 위임사무명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